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23호 2025. 6.19.(목)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레

규 칙

고 시

- 예천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76호)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79호)

공 고

- 「예천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체육사업소 공고 제2025-13호)
-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공람·공고 (내성천 회룡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예천군 공고 제2025-937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예천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예천군 예천읍 청북리 855-11번지 일원의 예천경찰서 이전을 위한 예천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예 천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예천 도시지역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3	예천 경찰서	공공청사	예천읍 청북리 855-11번지 일원	-	증)12,325	12,325	-	

■ 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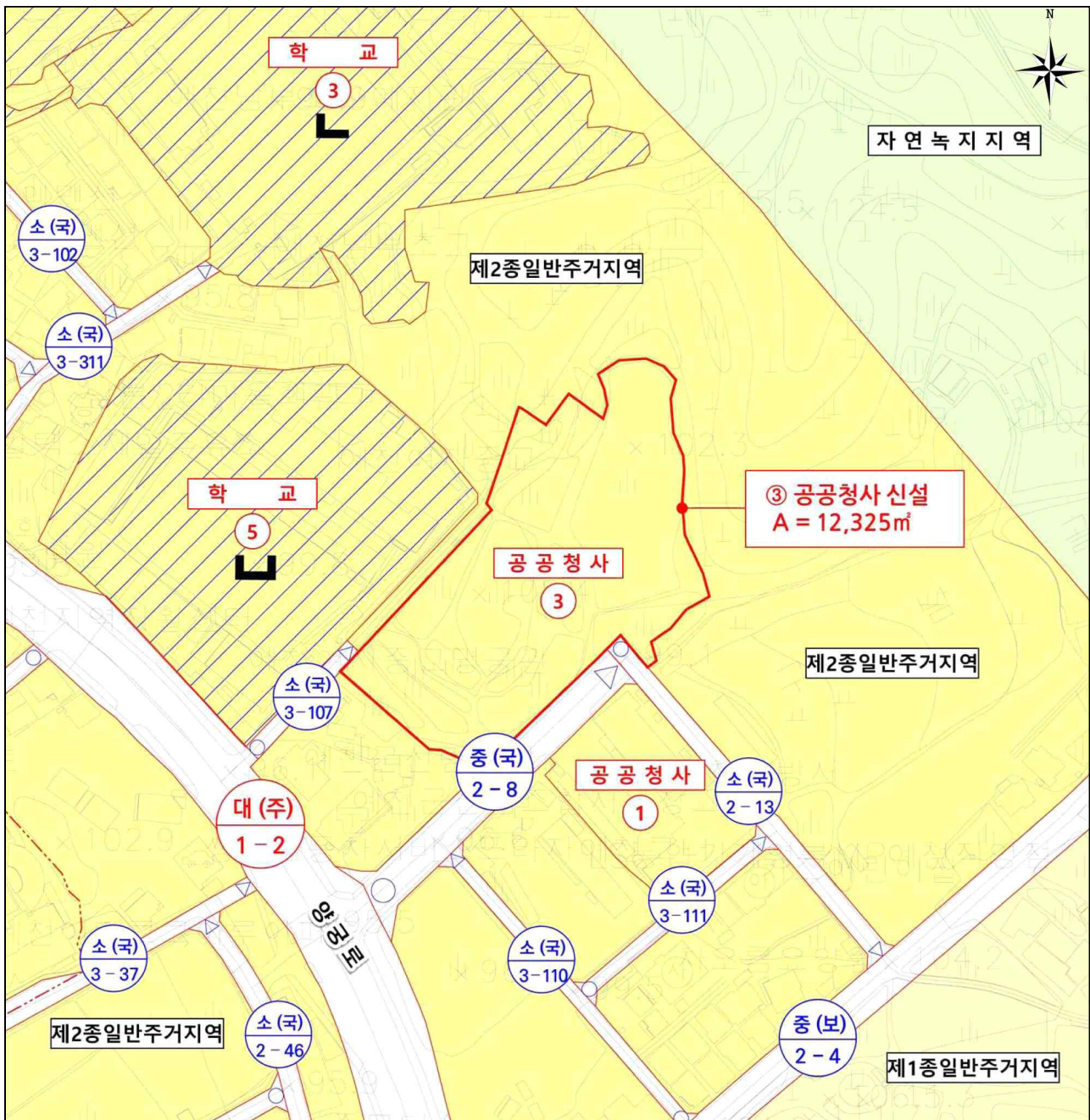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3	예천경찰서	• 공공청사(예천경찰서) 신설 A = 12,325㎡	• 주거지역 내 공공업무시설의 입지가 불가능함에 따라 해당 부지를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치안 강화와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

2. 군관리계획 결정 도서 및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 아래 결정도는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6) 및 재무과(☎054-650-6138)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군관리계획 결정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예 천 군



- ①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②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승 인 조 서

사업명	위 치				승인 면적 (㎡)	사업기간	총소요 사업비 (천원)	사업시행자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 (개간)	예천	지보	도화	산33	29,980	2025.06.19. ~ 2025.10.31.	156,267	최진* 박미* 최원* 홍영*

예천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예천군 관내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파크골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파크골프장의 위치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파크골프장의 이용료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안 제12조)
- 다. 파크골프장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안 제 19조)

4.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체육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 1) 전자우편(이메일) : lsb984@korea.kr
- 2) 주소 : 우)36819 경북 예천군 예천읍 양궁장길 38, 체육사업소 시설관리팀
- 3) 팩스 : 054-650-64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육사업소(전화: 054-650-642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
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관내 파크골프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천군 파크골프장”(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파크골프장, 각종 편익 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일반 이용객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군수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영리 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을 이용한 경우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7.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8. 음주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이용료) ①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③ 이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예천군 체육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100분의 50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2.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
13.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 구성원
14.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15. 18세 미만의 자녀 1명 이상을 동반한 직계존비속
16.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17. 주민등록상 예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
(다만,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안동시 풍천면에 주소를 둔 사람을 관내자로 간주한다.)
1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일일 이용객이 이용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2. 시설 보수로 인하여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운영 및 이용시간) ① 시설의 운영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 가. 하절기(6월 ~ 9월) : 07:00 ~ 19:00
 - 나. 그 외 : 09:00 ~ 17:00

2. 이용자 1회 이용 : 36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휴장) 시설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탁운영 시 변경할 수 있다.

1. 설, 추석 명절 연휴
2. 매주 월요일
3. 시설 개보수 및 잔디보호를 위한 정기 휴장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10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천군민의 건강증

진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2. 이용자 이용 수칙
3. 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

제11조(시설의 개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파손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이용자는 시설 사용 중 필요한 설비, 구조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종료와 동시에 철거 후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④ 이용자는 이용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파크골프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및 체육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 자격 및 기간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내용) ① 위탁내용, 위탁조건 등 위탁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 간 협약을 통하여 정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인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자체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 규정은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며 운영 수익금에서 사용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의 유지·관리

2.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및 재해 예방대책 수립

3. 시설 주변의 환경 보호와 관리 및 각종 편의 제공
4.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대외홍보
5. 그 밖에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조사의 협조 및 보고, 서류 제출 등

제16조(수탁자의 금지 행위)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설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시설의 임대 및 운영권 전대(轉貸) 행위
3. 시설의 원상(原象)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제1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에 따른 금지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5. 수탁자가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8조(보험 가입)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 피해 등을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

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천군 파크골프장의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명칭	위치	홀 수
한천 파크골프장	1구장 :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127 일원	54
	2구장 :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295-5 일원	
	3구장 :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257 일원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44 일원	18

[별표 2]

예천군 파크골프장 이용료 (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이 용 료		비 고
		기본요금	감면요금	
일일 이용객	18세 미만 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 이용객	4,000	2,000	1인 1일 1회 36홀 기준
	관내자	6,000	3,000	
	관외자	10,000	5,000	
비 고	1. “일일이용객”이란 일일 시설 이용료를 납부 후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족단위 이용객”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을 동반하여 함께 입장하는 자로서, 그 보호자인 부모,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를 말한다. 3. “관내자”란 주민등록상 예천군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단,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안동시 풍천면에 주소를 둔 사람을 관내자로 간주한다. 4. “관외자”란 관내자 외 모든 이용객을 말한다. 5. “감면요금”이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감면된 요금을 말한다. -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등 6.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이용객에 가장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중복감면 불가) 7. 이용료 납부는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8. 그밖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 바에 따른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 운집 인파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
임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
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
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
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

•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재산관리관이 직접 시행한다.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민간위탁 사무) ①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영상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주민편익시설 관련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교통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근로자복지·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예천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직영에 따른 시설 관리·운영 비용(안 제13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한천 파크골프장은 현재 예천군파크골프협회에서 위탁 관리·운영 중인 시설이므로 비용추계서에서 제외함(민간위탁금 연 28백만원)
- 2025년부터 운영 예정인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운영에 관한 사항만 작성하였음

3. 비용추계의 결과(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 입	이용료	24,600	73,800	73,800	73,800	73,800	319,800
	소계(a)	24,600	73,800	73,800	73,800	73,800	319,800
세 출	인건비	58,000	72,000	72,000	72,000	72,000	346,000
	자산취득비	23,500	-	-	-	-	23,500
	일반운영비	26,000	26,000	26,000	26,000	26,000	130,000
	유지보수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소계(b)	137,500	128,000	128,000	128,000	128,000	649,500
□ 총 비용(a-b)		△112,900	△54,200	△54,200	△54,200	△54,200	△329,7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군비		137,500	128,000	128,000	128,000	128,000	649,500
민간							
기타							
합계		137,500	128,000	128,000	128,000	128,000	649,50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체육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김미라(054-650-6410)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내성천 회룡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인정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6. 19.

예 천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2025. 07. 09. ~ 2028. 06. 22.(착공후 36개월)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내성천 회룡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경북 예천군 용궁면, 개포면, 호명읍 일원	○ 축제 : L = 2,453m · 회룡제 : L = 419m · 회룡포제 : L = 1,705m · 직산제 : L = 329m ○ 보축(제방보강) : L = 3,687m · 죽전제 : L = 1,054m · 신음2제 : L = 918m · 상수월1제 : L = 643m · 담암제 : L = 1,072m ○ 퇴적토정비 : L = 1,306m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하천공사1과)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104-3

2. 공람장소, 공람기간

사업명	열 램 장 소	열람기간
내성천 회룡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4층) T.054-650-6160	2025.06.19. ~ 2025.07.03.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5.06.19. ~ 2025.07.03.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1과(☎055-212-03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사업의 종류	하 천 사 업		
사업의 명칭	내성천 회룡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사업의 위치	경북 예천군 용궁면, 개포면, 호명읍 일원		
제출인	주 소		
	성 명		(서명)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읍면	리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용궁	대은	산53-3	임	14238.0	852.0	공	예천군				
2	용궁	대은	산50-6	임	1265.0	682.0	공	예천군				
3	용궁	대은	산50	임	1832.0	309.0	조*래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				
4	용궁	대은	565-2	대	612.0	117.0	조*국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				
5	용궁	대은	964	도	3521.0	1900.0	국	국(건설부)				
6	용궁	대은	483-4	전	736.0	632.0	조*국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농어촌진흥공사 문경군지부	등)의왕시 포일동 487(문경군지부) 현)경북 문경시 산양면 금천로 42-4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근저당권	채무자 (조*국)
7	용궁	대은	483-9	도	70.0	70.0	윤*식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8	용궁	대은	483-3	답	843.0	398.0	조*국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농어촌진흥공사 문경군지부	등)의왕시 포일동 487(문경군지부) 현)경북 문경시 산양면 금천로 42-4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근저당권	채무자 (조*국)
9	용궁	대은	483-8	도	14.0	14.0	윤*식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10	용궁	대은	950	천	976955.0	57227.0	국	국(건설교통부)				(퇴적토정비)
11-1	용궁	대은	564-4	도	117.0	58.0	이*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252 이수브라운스톤아파트****-***				지분 302/778
11-2							임*국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지분 476/778
12	용궁	대은	564-1	답	1353.0	378.0	임*성	경상북도 안동시 제비원로 172 ***동 ****호(금곡동 태성경안타운)				
13	용궁	대은	484	도	750.0	347.0	공	예천군				
14	용궁	대은	484-1	도	7.0	7.0	임*태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15	용궁	대은	501-4	도	90.0	90.0	공	예천군				
16	용궁	대은	564-5	도	138.0	94.0	공	예천군				
17	용궁	대은	490-2	도	74.0	74.0	김*태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18	용궁	대은	564-3	도	258.0	18.0	공	예천군				
19	용궁	대은	501-2	답	2951.0	536.0	김*규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20	용궁	대은	501-1	답	2963.0	389.0	김*규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신당길 **				
21	용궁	대은	501	답	2367.0	339.0	김*규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신당길 **				
22	용궁	대은	502-2	답	2202.0	350.0	김*해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	용궁새마을금고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용궁로 111-6	근저당권	채무자 (김*해)
23	용궁	대은	502-1	답	309.0	59.0	조*동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고두실길 ***				
24	용궁	대은	502	답	986.0	186.0	조*동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고두실길 ***				
25-1	용궁	대은	503-1	답	2033.0	407.0	조*동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고두실길 ***	예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96	근저당권	채무자 (조*동)
26	용궁	대은	503	답	770.0	117.0	조*동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고두실길 ***	예천축산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96	근저당권	채무자 (조*동)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읍면	리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7	용궁	대은	501-3	구	1324.0	1324.0	국	국(농림수산부)				
28	용궁	대은	503-2	답	633.0	117.0	조*동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고두실길 ***				
29	용궁	대은	503-6	답	1627.0	7.0	조*동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고두실길 ***				
30	용궁	항석	659	천	715806.0	872.0	국	국(건설교통부)				(퇴적토정비)
31	용궁	대은	950	천	976955.0	94647.0	국	국(건설교통부)				(퇴적토정비)
32-1	용궁	대은	산41-1	임	169388.0	73.0	박*환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지분 1/5
32-2							박*환	서울 노원구 월계동 ***				지분 1/5
32-3							박*환	서울 노원구 월계동 436 동신아파트 ***				지분 1/5
32-4							박*일	안산시 선부동 ***				지분 1/5
32-5							박*복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지분 1/5
33	용궁	대은	산31	임	9733.0	513.0	백*규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박사길 ***				
34	용궁	대은	349	대	904.0	419.0	채*희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용개로 ***	용궁새마을금고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용궁로 111-6	근저당권	채무자 (채*희)
35	용궁	대은	959-7	구	1130.0	512.0	국	국(농림수산부)				
36	용궁	대은	349-1	도	531.0	150.0	공	예천군				
37	용궁	대은	347-3	도	365.0	94.0	공	예천군				
38	용궁	대은	347-1	답	2395.0	2357.0	장*분	경상북도 문경시 중앙시장2길 *** (점촌동)				
39	용궁	대은	347-2	답	125.0	109.0	공	예천군				
40	용궁	대은	347	답	1455.0	1455.0	김*주	정촌시 모전동 ***				
41	용궁	대은	959-6	구	1470.0	711.0	국	국(농림수산부)				
42	용궁	대은	346-8	답	1208.0	79.0	공	예천군				
43	용궁	대은	346-2	답	595.0	26.0	박*환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4	용궁	대은	958-1	도	628.0	628.0	국	국(농림수산부)				
45	용궁	대은	346-1	답	739.0	7.0	박*환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6	용궁	대은	958	도	22704.0	8058.0	국	국(농림수산부)				
47	용궁	대은	443-2	답	661.0	661.0	공	예천군				
48	용궁	대은	443-1	답	2397.0	1859.0	한**어촌공사	등)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빛가람동) 현)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49	용궁	대은	443	답	2825.0	2288.0	한**어촌공사	등)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빛가람동) 현)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읍면	리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0	용궁	대은	330	답	1968.0	3.0	순흥*씨*파공파종중	예천군 용궁면 월오리 ***				
51	용궁	대은	328-2	답	1013.0	58.0	박*현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361-7 ***동 ***호(송현동)				
52	용궁	대은	328-1	답	786.0	71.0	박*현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361-7 ***동 ***호(송현동)				
53-1	용궁	대은	328	답	2258.0	398.0	김*옥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지분 1/2
53-2							박*현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88-4, ***호				지분 1/2
54	용궁	대은	326	답	1586.0	534.0	조*중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55	용궁	대은	325-1	답	1334.0	617.0	김*진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56	용궁	대은	325	답	1466.0	1250.0	조*탁	서울시 도봉구 창동 ***				
57	용궁	대은	959-5	구	1833.0	138.0	국	국(농림수산부)				
58-1	용궁	대은	316-1	답	1578.0	319.0	박*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94번길 11 ***호 (송죽동 은하아파트)				지분 3/5
58-2							조*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94번길 11 ***호 (송죽동 은하아파트)	남예천농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2길 28	근저당권	지분 2/5, 채무자(조*호)
59	용궁	대은	316	답	1817.0	1817.0	박*환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60	용궁	대은	959-4	구	680.0	65.0	국	국(농림수산부)				
61	용궁	대은	277-1	답	1592.0	92.0	박*환	문경군 점촌읍 불정동 ***				
62	용궁	대은	277	답	2280.0	2280.0	박*환	문경군 점촌읍 불정2리 ***				
63	용궁	대은	959-3	구	1047.0	99.0	국	국(농림수산부)				
64	용궁	대은	267	답	2021.0	2021.0	조*인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신기길 ***				
65	용궁	대은	268	답	1769.0	445.0	조*인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신기길 ***				
66	용궁	대은	959-1	구	516.0	80.0	국	국(농림수산부)				
67-1	용궁	대은	250	답	2009.0	1920.0	박*환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남로 15 ***동 ***호(연산동 연산동대우아파트)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본점영업부)	근저당권	채무자 (박*환)
67-2									황*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67번길 7, 106동 1402호 (좌동,해운대대창아파트)	근저당권	채무자 (김*람)
68	용궁	대은	250-1	답	1059.0	414.0	정*철	예천군 용궁면 대은동 ***				
69	용궁	대은	251	답	2203.0	160.0	정*철	예천군 용궁면 대은동 ***				
70	용궁	대은	959	구	569.0	105.0	국	국(농림수산부)				
71	용궁	대은	245	답	3327.0	2507.0	김*일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회룡길 ***	남예천농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2길 28	근저당권	채무자 (김*일)
72	용궁	대은	247	답	3011.0	4.0	조*옥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 49 ***호 (형곡동 형곡금오맨션)				
73	용궁	대은	959-13	구	326.0	86.0	국	국(농림수산부)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4	용궁	대은	470	답	3866.0	2641.0	윤*식	예천군 용궁면 대은동***				
75	용궁	대은	470-1	답	3027.0	30.0	윤*식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				
76	용궁	대은	959-12	구	320.0	103.0	국	국(농림수산부)				
77	용궁	대은	467	답	3404.0	2373.0	박*식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검우로 27 ***동 ***호 (경북도청신도시우방아이유셀센텀)				
78	용궁	대은	467-1	답	2777.0	35.0	박*식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검우로 27 ***동 ***호 (경북도청신도시우방아이유셀센텀)				
79	용궁	대은	959-11	구	125.0	67.0	국	국(농림수산부)				
80	용궁	대은	466	답	2827.0	2364.0	박*복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회룡길 ***				
81	용궁	대은	463	답	1866.0	999.0	이*자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회룡길 ***				
82	용궁	대은	463-1	답	1960.0	36.0	박*원	서울특별시 종량구 면목로37길 58 ***동 ***호 (면목동 면목두산아파트)				
83	용궁	대은	959-9	구	1899.0	136.0	국	국(농림수산부)				
84	용궁	대은	462	답	2939.0	2152.0	박*환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85	용궁	대은	959-15	구	2526.0	93.0	국	국(농림수산부)				
86	용궁	대은	481	답	844.0	800.0	박*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50길 *** (신림동)				
87-1	용궁	대은	481-1	답	1728.0	1619.0	박*환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남부초등길 ***				지분 1/2
87-2							박*석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지분 1/2
88-1	용궁	대은	482	답	2811.0	1240.0	박*환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지분 3/6
88-2							문*호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안마길 ***				지분 1/6
88-3							김*일	경상북도 영주시 원당로225번길 67, ***동 ***호				지분 1/6
88-4							최*규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도효자로 ***				지분 1/6
89	용궁	대은	482-1	답	2200.0	98.0	조*래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어화길 ***				
90	용궁	대은	482-3	도	227.0	77.0	공	예천군				
91	용궁	대은	480-1	도	1560.0	41.0	공	예천군				
92	용궁	대은	482-2	도	194.0	194.0	공	예천군				
93	개포	신음	480-2	천	140.0	33.0	국	국(환경부)				
94	개포	신음	477-2	천	956.0	627.0	국	국(환경부)				
95	개포	신음	545	천	710569.0	8900.0	국	국(환경부)				
96	개포	신음	478-1	천	711.0	637.0	국	국(환경부)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7	개포	신음	480-1	제	1924.0	1453.0	국	국(환경부)				
98	개포	신음	483-1	제	3648.0	2674.0	국	국(환경부)				
99	개포	신음	483-2	천	673.0	568.0	국	국(환경부)				
100	개포	신음	484-1	제	298.0	152.0	국	국(환경부)				
101	개포	신음	485-2	천	345.0	325.0	국	국(환경부)				
102	개포	신음	486-5	천	2258.0	1039.0	국	국(환경부)				
103	개포	신음	486-3	천	273.0	273.0	국	국(환경부)				
104	개포	신음	528-3	천	208.0	208.0	국	국(환경부)				
105	개포	신음	531-1	제	783.0	458.0	국	국(환경부)				
106	개포	신음	545-1	제	15568.0	8301.0	국	국(환경부)				
107	개포	신음	545-10	천	4816.0	96.0	국	국(건설부)				
108	개포	신음	26-1	제	1023.0	783.0	국	국(건설부)				
109	개포	신음	545-6	제	595.0	545.0	국	국(건설부)				
110	개포	신음	545	천	710569.0	5581.0	국	국(환경부)				
111	개포	신음	20-3	제	1273.0	1177.0	국	국(건설부)				
112	개포	신음	20-4	전	59.0	7.0	공	예천군				
113	개포	신음	20-5	전	69.0	69.0	공	예천군				
114	개포	신음	20-8	전	150.0	150.0	공	예천군				
115	개포	신음	20-7	도	530.0	88.0	공	예천군				
116	개포	신음	545-3	제	20642.0	11684.0	국	국(환경부)				
117	개포	신음	545-5	천	16325.0	2278.0	국	국(환경부)				
118	개포	신음	6-1	제	18.0	18.0	국	국(기획재정부)				
119	개포	신음	7-1	제	14.0	14.0	국	국(환경부)				
120	개포	신음	545-13	천	2434.0	876.0	국	국(건설부)				
121	개포	신음	545-4	천	19146.0	2740.0	국	국(환경부)				
122	개포	신음	545-11	천	511.0	437.0	국	국(건설부)				
123	개포	신음	545-12	천	77.0	67.0	국	국(건설부)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읍면	리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24	개포	신음	464-7	전	32.0	8.0	국	국(환경부)				
125	개포	신음	464-5	제	303.0	32.0	국	국(환경부)				
126	지보	수월	117	천	357.0	22.0	이*백	토지대장)주소불명 현)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수월리 ***				미등기
127-1	지보	수월	산1	임	9785.0	130.0	이*분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				지분 1/5
127-2							이*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401 현대한강아파트 ****-****				지분 1/5
127-3							이*우	경상남도 창원시 봉곡동 ***				지분 1/5
127-4							이*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				지분 1/5
127-5							이*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				지분 1/5
128	지보	수월	116-9	제	194.0	194.0	국	국(건설부)				
129	지보	수월	116-8	제	407.0	251.0	국	국(건설부)				
130	지보	수월	116-6	제	96.0	10.0	국	국(건설부)				
131	지보	수월	855-29	제	4351.0	2822.0	국	국(건설부)				
132	지보	수월	855-1	천	264791.0	16295.0	국	국(환경부)				
133	호명	담양	546-14	천	1088.0	29.0	국	국(건설부)				
134	호명	담양	122-6	천	316.0	205.0	국	국(환경부)				
135	호명	담양	566	도	356.0	227.0	국	국(환경부)				
136	호명	담양	122-5	제	1184.0	644.0	국	국(환경부)				
137	호명	담양	546-10	제	1680.0	1257.0	국	국(환경부)				
138	호명	담양	546-1	천	950367.0	16791.0	국	국(환경부)				
139	호명	담양	577	도	327.0	252.0	국	국(환경부)				
140	호명	담양	126-5	제	3085.0	1973.0	국	국(환경부)				
141	호명	담양	126-6	천	1759.0	1522.0	국	국(환경부)				
142	호명	담양	578	도	112.0	84.0	국	국(환경부)				
143	호명	담양	546-9	제	17646.0	6431.0	국	국(건설교통부)				
144	호명	담양	131-1	제	1162.0	650.0	국	국(환경부)				
145	호명	담양	132	제	308.0	31.0	국	국(환경부)				
146	호명	담양	543	제	466.0	67.0	국	국(환경부)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읍면	리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47	호명	담암	544	제	1081.0	207.0	국	국(환경부)				
148	호명	직산	1103	전	122.0	122.0	우*석	토지대장)주소불명 현)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을 직산리 ***				미등기
149	호명	직산	1102	임	41365.0	164.0	권*옥	토지대장)예천읍 왕신동 현)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을 진산리 ***				미등기
150	호명	직산	1272-1	천	265018.0	16170.0	국	국(건설부)				
151	호명	직산	1212-2	천	450.0	109.0	정*진	충남 천안시 구성동 ***				
152	호명	직산	1212-1	전	3306.0	170.0	정*진	구리시 인창동 인창택지개발지구 1블럭 주공아파트 ***-***				
153	호명	직산	1060-4	답	575.0	183.0	국	국(건설교통부)				
154	호명	직산	1060-20	답	25.0	7.0	국	국(건설교통부)				
155	호명	직산	1060-5	답	1376.0	791.0	우*근	예천군 호명면 월포동 ***				
156	호명	직산	1060-14	제	57.0	34.0	국	국(건설부)				
157	호명	직산	911-4	구	281.0	269.0	국	국(농수산부)				
158	호명	직산	1077-2	답	23.0	20.0	권*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670 주공아파트 ***동 ***호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서울 도봉구 마들로 760, 502,503호(도봉동, 한밭법조타워)	가압류	
159	호명	직산	1302-4	구	10.0	10.0	국	국(농림부)				
160	호명	직산	1060-3	답	1653.0	106.0	권*녀	예천군 호명면 월포동***				
161	호명	직산	1060-13	제	82.0	82.0	국	국(건설부)				
162	호명	직산	1314-2	도	86.0	60.0	국	국(건설부)				
163	호명	직산	1060-1	답	448.0	33.0	권*녀	태백시 황지동 274-757 선영1차 임대아파트-***				
164	호명	직산	1060-12	제	52.0	52.0	국	국(건설부)				
165	호명	직산	1059-7	답	2312.0	25.0	국	국(건설교통부)				
166	호명	직산	1059-12	제	650.0	164.0	국	국(환경부)				
167	호명	직산	1285-6	구	23.0	12.0	국	국(농림부)				
168	호명	직산	1071-3	제	764.0	59.0	우*성	예천군 호명면 월포동 ***				
169	호명	직산	1313	도	2856.0	25.0	국	국(건설부)				